

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

의 안 번 호	2004~5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	2004. 1
제 출 자	보건소장

■ 제정이유

- 최근 노인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해 노인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또한 이들 대부분은 치매, 중풍, 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에게 정신적·경제적인 큰 고통을 주고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음
-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군립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함에 따라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의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수탁자는 치매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정한 치료 등을 위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(안 제6조)
-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등 의료수가,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사항을 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
- 공유재산은 수탁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- 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1조 및 제12조)

■ 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제135조) 및 지방재정법시행령
- 의료법(제30조)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(이하 “**치매요양병원**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치매요양병원은 거창군 관할 구역 내에 둔다.

제3조(업무) 치매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
2.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
3. 치매환자에 대한 장·단기적인 요양 서비스
4. 기타 치매에 관련된 사업

제4조(설치·운영) ①거창군수(이하 “**군수**”라 한다)는 치매요양병원을 설치·운영 한다. 다만, 군수는 사업비(병원건립비, 의료장비비)의 일부를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위탁할 수 있다.

1. 의료법인(다만,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)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
2.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
3.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

②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**수탁자**”라 한다)에게 치매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3천만원 이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 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④치매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, 군수가

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제5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②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설,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6조(관리규정)** 수탁자는 치매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목적 및 운영방침(기본방침, 치료, 간호, 보호의 기본방침, 지역 행정과 연계 방침, 직원연수 방침 등)
2. 직원의 정원, 직종 및 직무 내용
3. 입원자의 정원
4. 의사 등 직원의 주·야간, 휴일근무체제 및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기타 서비스 내용
5.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
6. 비상재난(화재 등)
7. 기타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- 제7조(의료수가)** ①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- 제8조(입원 및 퇴원)** 치매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의 운영기준에 대하여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

- 제9조(공유재산 사용 등)**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- 제10조(기록 정리)** 치매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관리에 관한 사항

- 가. 운영일지
 - 나. 직원의 근무상황·급여·연수 등에 관한 사항 등
2. 입·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
 3. 요양·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
 - 가. 입원환자 기록대장(병력·생활력·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)
 - 나. 진료간호·기능훈련 등의 일지
 - 다.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
 4.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
 5.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

제11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탁의 취소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병원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2. 수탁자가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한 때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